

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767 / 전송 731-6369  
처리부서 : 도로관리과 시청본관 4층 담당 한정무

문서번호 도관58710-708  
시행일자 1997. 5. 16  
(제 1안)  
수신 내부결재  
197. 5. 16.  
제199/5  
22호

취급		시	장
보존	년	법무담당관 심사필 협조	
국장	전결		
과장	한정무		
계장	한정무		
기안	한정무		

제 목 차량통행제한 공고 12.362-1997.5.16

1. 건설안전관리본부 도관 58700-695(197. 5. 13)호와 관련입니다.
  2. 청계고가도로 공고 = 차량통행제한 구간의 상판보수공사에 따라 신속하고 완벽한 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의 차량통행제한 공고 요청이 있어,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따로붙임의 공고(안)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.
- 따로붙임 1. 차량통행제한 공고(안) 1부.  
2. 위치도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장

(제 2안)

수신 공보담당관

제 목 시보 게재 의뢰

1. 아래와 같이 시보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게재 구분 : 공고
  - 나. 게재 건명 : 차량통행제한 공고
  - 다. 게재 내용 : 따로붙임
  - 라. 법적 근거 : 도로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8조의3

따로붙임 : 1 차량통행제한공고(안) 2부. 끝.

## 도로관리과장

(제 3 안)

수 신 서울지방경찰청장

참 조 교통관리과장

제 목 차량통행제한 공고 통보

1. 우리시 건설안전관리본부도관 58700-202('97. 2. 11)호 및 도관 58700-69 5('97. 5. 13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청계고가도로 광고 ~ <sup>21제4호</sup> ~~세운상가~~ 구간의 상판보수공사로 인하여 도로법 제 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도로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해 따로붙임공고(안)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.

따로붙임 1. 차량통행제한 공고(안) 1부.

2. 위치도 1부. 끝.

(제 4 안)

수 신 건설안전관리본부장

참 조 도로관리부장

제 목 차량통행제한 공고 통보

1. 도관 58700-695('97. 5. 13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대호로 요청한 차량통행제한 공고는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, 통행제한에 따른 안내·규제표지판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참 부 1. 차량통행제한 공고(안) 1부. <sup>21제4호</sup> 끝.

(제5안)

수 신 수신처 참조

제 목 차량통행제한 공고 통보

1. 건안 도관 58700-695('97. 5. 13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청계고가도로 광고 ~ <sup>21제4호</sup> ~~세운상가~~ 구간의 상판보수공사로 인하여 도로법 제 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도로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해 따로붙임공고(안)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.

- 따로붙임 1. 차량운행제한 공고(안) 1부.  
2. 위치도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수신처 : 성동·동대문·종로·중구청장(토목과장), 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

장

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 1997 - 호

차량통행제한 공고

도로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자  
같은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 
합니다.

1997년 5 월 일

서울특별시장

도로의 종류	· 특별시도	시 설 명	· 청계고가도로 (남산1호터널·광고 → 마장동)
제한의 대상	· 전면통행금지		
기간 및 구간	기 간	구 간	
	'97년5월18일10:00 ~ '98년6월30일	· 광고 → 청계2가 · 청계 4가 → 광고	
	'97년6월10일10:00 ~ '98년6월30일	· 남산 → 청계 2가 → 청계 4가	
이 유	· 청계고가도로 상부스라브의 전면개수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위험 방지		
문 의 처	·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 (전화번호:731-6766~8) ·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도로관리부(전화번호:3708-2361)		
<p>&lt;위 치 도&gt; 생략</p> <p>※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, 건설안전관리본부 도로관리부에 도면 비치</p>			